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의 위탁 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수탁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출자자의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벤처투자조합과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기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의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산의 보관·관리 업무의 범위) 신탁업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실물 자산의 대사
4. 조합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 등의 수입
5. 그 밖에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와 관련된 업무

제5조(위탁 계약의 체결)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신탁업자와 조합의 설립출자금 납입 이전에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에는 수탁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

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기 전에 위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은 벤처투자조합을 위해 효력을 갖는다.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규약의 변경 등으로 위탁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해외투자로 인해 외화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합 재산의 운용지시 전 확인)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신탁업자와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 등록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탁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 등록원부
2. 고유번호증
3. 해당 조합의 규약

② 신탁업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최초로 법 제2조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운용지시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운용지시서에 날인된 서명 또는 사용인감이 사전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방법) 신탁업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 재산의 운용지시 및 이행)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은 투자금액, 투자기업 및 입금계좌 등을 정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투자금은 별도계정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투자기업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2. 투자금 납입일이 한국은행 지준마감일인 경우
 3. 투자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입금계좌를 달리 정하는 경우
- ②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1에 따른 운용지시서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다만, 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주명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투자기업과 체결한 투자계약서
- ③ 신탁업자는 자금 운용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점유하여야 한다.
-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투자와 관련한 권리증서를 신탁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5영업일이 지나더라도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권리증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기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증서를 점유할 수 없다.
- ⑦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 현금 거래 없이 권리증서가 변경되거나 권리증서의 기재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신탁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기존 권리증서를 대체하여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권리증서를 점유하여야 한다.

- ⑧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법령 및 조합 규약에 근거하여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법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다.
- ⑨ 신탁업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지시 내용이 불충분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운용지시를 철회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안정적인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은행 및 증권사의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만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규약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 및 증권사의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이외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 ⑪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만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⑫ 신탁업자는 금융상품의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분기말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금융상품의 만기 도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자산 보관내역에 금융상품의 만기도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⑬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 재산의 운용현황을 신탁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탁업자에 통보하고자 할 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거래잔액조회서 등에 해당 금융기관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장기업 투자에 관한 관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51조제4항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비율 범위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 ②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증권사와의 특약을 통해 증권거래계좌의 변경 또는 해지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탁업자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증권사와의 특약을 통해 증권거래계좌 이외의 계좌로의 입출금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증권계좌 개설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증권카드 및 증권거래 통장을 신탁업자에 인도하여야 한다. 증권카드와 증권거래 통장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재산과 관련한 일체의 증권 계좌 및 거래 인감을 점유할 수 없다.
- ⑥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월 거래내역, 매월말 잔고내역 및 신탁업자가 요청하는 특정일의 잔고내역을 증권사로부터 제공받아 신탁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내역의 대사) ① 신탁업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보관내역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직전월 말일까지의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보관내역을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자산 보관내역을 제출함에 있어 실물자산(현금, 현금성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한다)의 변동이 없거나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제출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업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보관내역에 대하여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변경내역에 대한 근거서류를 징구하여 자산 보관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신탁업자의 변경) 벤처투자조합의 운용기간 내에 위탁 계약자

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전 신탁업자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변경후 신탁업자에게 일체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에 따라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조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1] 신탁업자의 점유 서류

구 분	투자유형별	공통
주 식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변경된 주주명부 변경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조건부지분인수 계약	계약서 사본, 영수증	
전환사채(CB)	전환사채권 또는 채권미발행확인서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신주인수권부사채권(분리형인 경우 워런트 포함) 또는 채권미발행확인서	
교환사채(EB)	교환사채권 또는 채권미발행확인서	
프로젝트 투자	영수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별지 1] 운용지시서

운용지시서

운용지시 개요

조합명		업무집행 조합원		운용 지시일	
-----	--	-------------	--	-----------	--

투자업체 개요 * 해당시 표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전 지분율		표준산업분류코드	
특수관계자와 거래	여/부	상장여부	여/부
기업 유형	창업기업 ()	투자지역	국내 ()
	벤처기업 ()		해외 직접 ()
	중소기업 ()		해외 SPC ()

투자유형 및 투자금액	구 분	투자금액	수량	투자단가	기타
	신주인수				신주종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프로젝트투자				프로젝트명
	구주 등 인수				거래상대방기재 (주민등록번호)
	상장주식				
	조건부지분인수 계약				
	기타 ()				
합 계					
투자구분	인정/주목적/특수목적 (투자유형별로 기재)				

운용지시 내용

조합 기본계좌 :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단위 : 원)

구분 (입금/출금)	입출금목적	입출금내역			처리 요청일
		송금은행계좌	입출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타기재사항		보유주식 등의 변동사항			

운용지시 확인

본 운용지시는 자산보관위탁계약서 제*조에 의한 운용지시임을 확인합니다.		
명판	서명 또는 사용인감	담당자

첨부 : 투자계약서(주요 부분),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투심위 의사록(필요시)